

서울고등법원 2018. 9. 20 선고 2018나2006769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피항소인 A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

담당변호사 안형운

피고,항소인 1. G

2. H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상헌

변론 종결 2018. 8. 30

판결 선고 2018. 9. 20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가합571020 판결

주 문

1.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 및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C와 피고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8. 17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92,794,1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 G은 원고에게 292,794,1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피고 H의 항소를 기각한다.

3.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G이,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H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피고 G에 대하여 주문 제1의 가, 나.항 기재와 같은 판결(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G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 부분은 감축하고, 가액배상청구 부분은 확장하였다).

나. C와 피고 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8. 17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
피고 H는 원고에게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O 11면 2행의 "피고 C에게"를 "C 또는 B 계좌로"로 고친다.

O 13면 1~3행의 "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...계산상 명백하다"부분을" 당심변론종결일(2018 . 8. 30.) 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C 에 대한 채권액이 292, 794, 148원(=대위변제금 233, 123,

255원 + 법적 절차비용 368, 170원 +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2016 .10. 7. 부터 2017 . 5. 16. 까지는 연 10% 의, 그 다음날부터 2018 . 8. 30. 까지는 연 15% 의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(합계 59,302,723원)임은 계산상 명백하다”로 고친다.

O 13면 7행 및 8행의 "263,765,513원"을 "292,794,148원"으로 고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및 확장된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

이 법원에서의 청구 취지감축및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,피고 H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재호판사 홍지영판사 조은래

별지